

임직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칙

제정 2026. 03. 17. 규칙 제20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맞춤형 복지 제도의 관한 기본 원칙, 운영 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직원의 복리증진과 업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 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임직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포인트)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복지점수”란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란 근속기간 및 부양가족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진흥원 제규정에서 정의한 임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병역휴직, 법정업무수행휴직, 일시사역근로자, 단기간근로자(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직), 학업휴직, 수습중인 직원은 제외하며, 기타제외 대상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육아휴직자, 가족돌봄휴직자, 질병휴직자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맞춤형 복지 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 제도의 다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진흥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율항목은 임직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단,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단순생활비(생활용품, 아파트관리비, 대중교통비, 통신요금 등), 유가증권구매(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온누리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제외)등은 자율항목에서 제외한다.

제5조(복지점수 배정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적용대상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복지점수
 2. 근속복지점수: 근속연수에 따라 배정되는 복지점수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부양가족수에 따라 배정되는 복지점수
- ② 제1항2호에 따른 근속복지점수의 근속기간은 최근 입사일로부터 기산한다.
- ③ 제1항3호에 따른 가족복지점수의 근거가 되는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의 지급규정을 준용하며, 복지점수 배정범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는 설계일 기준(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설계일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 및 가족상황의 변동사항은 그 해당연도의 복지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중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 산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초에 연 단위로 부여하며, 적용 기간에 근속연수 변경 등 기타 사유로 복지점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 ③ 제3조에 의한 비 지원 대상자가 신분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복지 점수를 새로이 부여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15일 이상 근무)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 ④ 임직원의 신분 변동(전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휴직, 파견, 신규채용,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 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15일 이상 근무)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 ⑤ 복지점수의 계산에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하며, 신분 변동일 기준 미사용 점수는 일정기간 내에 소진시키고, 초과 사용 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한다.
- ⑥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가족복지점수를 배정 받을 수 있는 직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직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한다.
- ⑦ ‘월할 계산’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한다.
- ⑧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회계처리 및 특례) 복지점수의 회계처리는 진흥원 회계 규정을 준용하되, 복지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운용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관리 등) 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

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운용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당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용협약서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복지점수 사용 실태를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 및 제한 항목) 복지점수의 사용 및 제한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단, 세부 항목은 제7조에 의한 금융기관과 체결한 운용협약서로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2026. 03. 17. 규칙 제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점수 사용항목 및 지급제외대상

분 야 별	수혜대상	자 율 항 목	지급제외대상
건강관리	본인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보청기 구입, 수영장 등 운동시설 이용 등 임직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 및 미용 비용 등
자기개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 등 임직원 본인의 능력발전, 품위유지(의류, 신발, 가방 등) 및 봉사활동(자원봉사, 기부 가능)을 위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외의 자기개발비
여가활용	본인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공연관람, 박물관, 동물원, 유적지, 문화행사 참여 관람 등 임직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품 등
가정친화	본인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자녀 교육비(자녀 학원비, 교재구입비, 교복구입비), 효도관광, 결혼식, 장례식, 가족여행비, 기념일 꽃 배달, 이사비, 주말농장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단란 주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
기 타	본인 및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온누리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반려동물 병원비, 차량관리(보험, 수리, 세차, 주유)비,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생활비(생활용품, (식재료 포함), 아파트 관리비, 대중교통비, 통신 요금 등, 반려용품, 동물미용 등
공 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온누리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제외)